

회장직무대행

상근부회장

2019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2019. 6. 3.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9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19. 6. 3(월) 11:00 ~ 12:10

2. 장 소 : 우리 협의회 회관(2층) 삼다수홀

3. 참석인원 : 재적이사 29명 중 21명 참석(감사 1인은 정족수 제외)

가. 참석(17명) : 부형종, 고승화, 이연봉, 김순실, 김순효, 김효철, 박영식, 박정해, 석 건, 양광호, 양은심, 양은정, 원석철, 윤보철, 윤홍기, 이홍기, 이귀경

나. 위임(4명) : 안근보, 고보선, 김금자, 강정숙

다. 감사(1명) : 고두승

4. 개회 및 성원보고

김성건 사무국장의 성원보고 후 부형종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5. 의장인사

잘 아시다시피 고치환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인해 정관 규정에 따라 제가 직무대행으로서 오늘 이사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고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달라고 하다.

6. 전차회의록 처리

- 의장 : 김성건 사무국장에게 전차회의록 낭독을 지시하다.

- 김성건 사무국장 : 전차회의록을 낭독하다.

- 의장 : 전차회의록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는지 묻다.

- 윤보철 이사 : 원안 동의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장 : 전자회의록이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언하다.

7. 부의안 심의

가. 부의안 채택

- 의장 :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제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9 취약계층 관절수술 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사업추진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제3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4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9년도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지원 일자리창출사업 특별회계 사업추진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제5호 의안 2019년도 아라어린이집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6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직무대행자 지정안이라고 하고,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6가지 안건을 채택하겠다고 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장 : 원안대로 6건의 안건이 채택됨을 선포하다.

나. 부의안 상정

- 의장 : 의안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채택된 심의 안건 중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된 제1호 의안과 제2호 의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한 후에 아라복지관과 관련된 제3호 의안과 제4호 의안을 역시 일괄상정하여 심의하고, 아라어린이집 안건인 제5호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고 끝으로 제6호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제안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장 : 제1호 ~ 제2호 의안을 일괄 상정하다.

다.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장 : 사회복지협의회 김성건 사무국장에게 제안설명을 지시하다.

- 김성건 사무국장 : 제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9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9 취약계층 관절수술 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사업추진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하다.

- 의장 : 제1호 의안, 제2호 의안에 대한 이사들의 질의·토론을 요청하다.

- 양광호 이사 : 제주도내 사회복지분야 인권향상프로그램의 경우 인권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도내 강사인력을 활용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참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다.

- 김효철 이사 : 인권감수성 향상교육과 인권워크숍은 각 2회씩 개최되는 것인지 묻다.
- 김성건 사무국장 :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1회씩 나누어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다.
- 이홍기 이사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매년 인권교육들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그 교육방법들이 매번 유사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어 교육효과가 높지 않은 것 같다며 사례중심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 진다면 교육효과가 좀더 높지 않을까 한다며 교육진행시 참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다.
- 김성건 사무국장 : 이사님들이 제안해 주신대로 제주지역 인권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교육진행 시 사례중심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사들에게 요청하겠다고 하다.
- 양은정 이사 : 취약계층 관절수술 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묻다.
- 김성건 사무국장 : 취약계층 관절수술 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주지역 4개 공공병원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협의회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주대학교병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로 추천하면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원여부를 최종 확정한다고 하다.
- 의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다.

- 의장 : 상정된 제1호 의안과 제2호 의안 처리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박영식 이사 : 상정된 제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2019 취약계층 관절수술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사업추진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에 동의하다.
- 의장 : 박영식 이사의 상정된 제1호 의안과 제2호 의안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다며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장 : 제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9 취약계층 관절수술 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사업추진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라. 부의안 상정

- 의장 : 제3호 ~ 제4호 의안을 일괄 상정하다.

마.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장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권미애 부장에게 제안설명을 지시하다.
- 권미애 부장 : 제3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4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9년도 한국공항

공사 제주지역본부지원 일자리창출사업 특별회계 사업추진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하다.

- 의장 : 제3호 의안, 제4호 의안에 대한 이사들의 질의·토론을 요청하다.
- 양은심 이사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지원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묻다.
- 권미애 부장 : 공항 소음피해 지역 일자리 취약계층 3명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다.
- 양은심 이사 : 사업계획상 내용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과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성과가 나올지 의문이라며 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업 종료 이후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조성태 관장 : 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사업내용을 제안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지난 7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으로서 이번에는 사업기간이 회계연도를 넘어서서 내년 2월까지 진행되어 부득이 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되었다고 하다.
- 박정해 이사 : 7년간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라면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묻다.
- 조성태 관장 : 제주시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양은심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며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말고 사업이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사업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다.

- 고승화 부회장 : 7년간 이뤄진 사업이라면 사업평가라던지 기대효과가 함께 제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며 그래야 좀 더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의견들을 사업추진 시 고려해 주기를 당부하다.
- 조성태 관장 : 이사님들의 의견들을 사업추진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하다.
- 의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다.
- 의장 : 상정된 제3호 의안과 제4호 의안 처리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박영식 이사 : 상정된 제3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4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9년도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지원 일자리창출사업 특별회계 사업추진 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에 동의하다.
- 의장 : 박영식 이사의 상정된 제3호 의안과 제4호 의안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다며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장 : 제3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4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9년도 한국공항 공사 제주지역본부지원 일자리창출사업 특별회계 사업추진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바. 부의안 상정

- 의장 : 제5호 의안을 상정하다.

사.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장 : 아라어린이집 이승희 원장에게 제안설명을 지시하다.

- 이승희 원장 : 2019년도 아라어린이집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하다.

- 의장 : 제5호 의안에 대한 이사들의 질의·토론을 요청하다.

- 의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다.

- 의장 : 상정된 제5호 의안 처리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양은심 이사 : 상정된 제5호 의안 아라어린이집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에 동의하다.

- 의장 : 양은심 이사의 상정된 제5호 의안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다며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를 동의, 자청하다.

- 의장 : 제5호 의안 2019년도 아라어린이집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아. 부의안 상정

- 의장 : 제6호 의안을 상정하다.

자.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장 : 사회복지협의회 김성건 사무국장에게 제안설명을 지시하다.

- 김성건 사무국장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직무대행자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하다.

- 의장 : 김성건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자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의결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나 이사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사무처의 의견이 있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본다고 하다.

- 이연봉 부회장 : 의장님의 말씀처럼 제6호 의안은 당초 굳이 안건으로 상정될 필요가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안건으로 상정된 것 같다고 하고, 현행 정관은 회장 유고 상황이 발생한 즉시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어 협의회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하다. 따라서 본 안건은 별도로 의결이 필요 없으므로 앞으로 부형종 부회장께서 직무대행으로서 최선을 다 해 달라는 의미의 박수로써 통과하면 좋겠다고 하다.

- 의 장 : 박수로써 격려해 주신 임원님들께 감사드리다고 하고, 규정상 직무대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 동안 맡은 바 역할에 충실히 하겠다고 하고, 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다.

8. 기타사항

- 의 장 : 기타사항으로 논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다.

- 고두승 감사 : 현재 직무대행자는 정관에 정하고 있어 그에 따르면 되는데 정관에 회장 유고시 회장선출에 대한 사항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통상 다른 법인들의 경우 회장 유고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때와 1년 미만일 때에 따라 보궐선거를 할지 직무대행 체제를 다음 선거까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우리 협의회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다.

- 이연봉 부회장 : 현재 정관상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직무대행 기간은 2월 이내로 봐야하며, ‘보궐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2월 내 회장선출을 마친다고 해도 회장 임기가 5개월 밖에 되지 않으며 그 사이에 다시 회장선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다. 또한, 현재 정관 규정상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데 5개월 회장직을 수행한 경우에도 1회 재임으로 봐서 1회 연임제 한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다.

이에 직무대행체제 기간 중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한 정관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다. 즉, 이번 경우처럼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궐방식을 정확

히 규정하고, 임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회장을 선출할 경우 1회 연임제한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정관개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2개월 내로 처리가 가능한지 사무처에 물다.

- 김성건 사무국장 : 오늘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이사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이번주 개최 예정인 제3차 임시이사회에 정관개정안을 심의하여 빠른 시일내로 총회를 개최한다면 2월 내에 정관개정을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하다.
- 의장 : 이연봉 부회장이 현재 정관이 회장 유고시 처리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설명해 주셨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관개정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다. 이연봉 부회장의 건의하신 정관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물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장 : 그럼 정관개정안을 오는 6월 7일 개최 예정인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정관개정안 내용은 사무처에서 이연봉 부회장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하다.
- 의장 : 더 이상의 기타사항에 대한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기타사항에 대한 논의 종결을 선언하다.

9. 폐회

- 의장 :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하고, 아울러, 오늘 논의된 바와 같이 향후 이사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추진함으로써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하다.
- 박정해 이사 : 폐회를 동의하다.
- 이사들 동의, 재정하다.
- 의장 : 2019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시간 12:10)

2019년 6월 3일

회장 직무대행 : 부형종

부회장 : 고승회

이연봉

이사 : 김순실

김순효

김효철

박영식

박정해

석건

양광호

양은첨

양은정

원석



이홍기

윤보



이귀

윤홍



확인자 : 고봉식



기록 : 김성건

